

첨단산업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첨단산업 지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각 첨단산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정하려는 첨단산업에 관한 자료를 보내고, 자료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협의여부에 관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으면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첨단산업으로 지정할 산업을 요청하고,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첨단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란 해당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특성 및 인재양성 과정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 ④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내에서의 정주의사가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라.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대상)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1년 이내에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종업원으로 고용되기로 계약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의 경우 채용후보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른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종업원으로 고용되기로 계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 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향후 4년간(2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가 통합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4년간)”으로 본다.

제5조(사내대학원의 변경인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인가를 받은 자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내대학원의 운영경비 부담범위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제7조(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교사, 교원 등)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의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 ④ 제3항의 규정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사내대학원의 학년도·학기 등)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학년도·학기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제9조(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등)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에 둘 수 있는 학위과정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3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내대학원만을 운영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내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등)

- ①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② 사내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1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한다

제12조(사내대학원의 폐쇄신고) 사내대학원의 폐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한다.

제13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기준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첨단산업 기업에서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둘 것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 3명 이상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 7명 이상
 - 다. 그 밖의 기업 : 10명 이상
 2. 제1호의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의인력을 둘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대학등”이라고 한다.)의 해당 첨단분야 또는 인재혁신 관련 학과나 부서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사람
 - 나. 첨단산업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인재혁신활동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인재개발교육 및 인재혁신활동을 위하여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 것
 4. 관련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5. 교육실습에 필요한 장비·기기를 확보할 것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재혁신활동 개요서(인재혁신 분야 포함)
 2. 교육프로그램 내용
 3.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현황 및 향후 보유계획
 4. 회사 및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조직도
 5.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위치한 건물 또는 해당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6. 교육실습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
 7.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서
-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서 교부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인재개발기관등 운영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3백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목의 전담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 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첨단산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첨단산업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첨단산업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에 180일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4.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신청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적은 서류
2. 정관
3. 지정신청하려는 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첨단 산업아카데미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첨단산업인재 양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성된 첨단산업인재 또는 인력의 구직알선 및 그 밖의 고용정보의 제공사업
2.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기업 컨설팅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 아카데미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서 교부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관 등이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소속된 기관 등이 폐지 또는 해산되거나 첨단산업아카데미 폐쇄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⑧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6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 : 3억원 이상
2. 인력 :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요원을 첨단산업 분야별로 3명 이상 둘 것
 - 가. 대학등의 해당 첨단분야 또는 인재혁신 관련 학과나 부서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사람
 - 나. 첨단산업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인재혁신활동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시설 :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2. 그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업
- 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유정보의 제공
 2.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 지원
 3.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의 양성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양성인과 인재혁신전문기업 간의 연계 지원
-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운영규정, 사업계획서와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지정신청하려는 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양성인의 등록요건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첨단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의미한다.
1.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 자격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첨단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4.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해당 첨단산업분야에서 1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이 양성한 인재의 취업을 위한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지원
 2. 전문양성인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등과 연계 지원
 3. 전문양성인에 대한 교수방법 등 교수역량 강화 지원
 4. 전문양성인의 취업 지원
-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고 등록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양성인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공유)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방·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에 대한 홍보·알선 및 정보제공
- 2.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3.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공유시 보안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제19조(인재혁신센터 설치 공공기관 등)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법 제22조에 따른 첨단산업 지역인재 혁신활동 지원
 - 2. 법 제14조에 따른 인재혁신센터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유관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활동의 지원
 - 3.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산업기술인협회 및 법 제18조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협의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 4.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첨단산업기술인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서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한 전문양성인의 양성·연수
-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양성인의 대학등으로의 취업 알선
- 3. 첨단산업인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에 합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1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계 구성원의 복리증진 지원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과 이행증진에 필요한 교육역량 강화 지원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규약서
2. 자율규약에 참여한 기업, 기관 및 단체의 동의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을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내용 포함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수리를 통보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인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혁신활동 지원사업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 상호간의 인재양성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의 공유사업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우수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
4. 대학등에서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업

제23조(인재혁신협의체) 법 제18조제1항의 업종별 첨단산업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지원의 범위·내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본다.

제24조(인력수급분석)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인력수급분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종별 첨단산업 인력의 고용동향, 고용양태 및 양성기관

2. 해외 첨단산업 수급동향 등 업종별 첨단산업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끼칠 사항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경우 그 개인정보를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력수급분석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수급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인력수급분석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력수급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인력수급분석 공표를 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의 영업비밀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25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산업”이란 국내경제 여건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의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협의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각 첨단산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실태조사를 첨단산업 인력혁신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체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기업종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첨단산업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규모, 종사자, 산업생태계 위기의 원인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해당 산업의 위기로 인한 산업적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기업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위기현황을 검토하여 지정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기업종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등 근로에 부대하는 지원
2. 위기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련 설비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3.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및 전문양성인을 통한 긴급 인재양성사업의 추진
4. 위기업종 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훈련시설에 필요한 교육시설, 장비 등의 지원
5. 다른 업종 종사자의 위기업종으로 직종전환 및 재취업 알선 지원
6. 위기업종 인재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속한 인재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의 첨단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지원사업
2. 지역의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등의 교육·훈련 위탁에 필요한 지원사업
3. 지역의 첨단산업 근로자의 교통기반 향상, 편의시설 지원사업
4. 지역의 첨단산업 집적지역 내 문화시설 조성 및 유치사업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6.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첨단산업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등에서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취업알선, 해외경험 지원
2. 청년·여성 첨단산업인재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3. 청년·여성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사업장 선택에 필요한 상담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지원

제29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직 직원의 재교육 지원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별·기술수준별 우수 첨단산업인재 분포 정보
2. 외국의 해외인재유치 정책·제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법 제27조제4호에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관을 상대로 한 홍보 및 구인활동 지원
2. 해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관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보교류 지원
3. 해외 인재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첨단산업 분야 학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 지원
5. 국내 기업의 근무 환경에 대한 홍보 지원
6. 국내 기업의 국외·온라인 채용활동 지원

제32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있는 학력, 근무연수 및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기준을 말한다.
-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에 취학하는데 필요한 지원 및 학비의 보조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지원
 4. 「외국인학교 및 외국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외 입학의 허용, 우선입학의 허용 및 내국인 자녀 학생 비율의 확대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나목은 제외한다), 제56조 및 제64조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서의 우대
2. 해외인재의 주거특성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국내 주택 임대차 제도 관련 상담, 중개, 자문, 알선의 지원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 해외인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3조(금융 등의 지원)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 선정기준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해당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배출된 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인재혁신 활동의 탁월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지원기준을 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우수기업 및 우수인재의 선정)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우수인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
 2.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제도 개선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인재로 인정하는 사람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포상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능력·경력 개발과 아울러 경력 개발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평가와 기반 구축 등 인재양성의 체계 구축과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
 2.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활용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 여부에 관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우수인재를 선정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시한다.

제35조(권한의 위탁)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4조에 따른

인재혁신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신청의 접수
2. 법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신청의 접수
3. 법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접수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기업종의 실태조사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인재의 활용 현황 실태조사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신청서의 접수 업무를 법 제14조에 따른 인재혁신 센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제4조제2항(「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1호	150	250	50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재개발	법 제38조			

기관등의 지정을 받은 자	제1항제2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받은 자	법 제38조 제1항제3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4호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5호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법 제38조 제1항제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위한 준비행위)

- ① 이 영 시행 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제출에 준하여 사내대학원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사내대학원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 교육부장관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승인절차에 준하여 사내대학원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른 사내대학원 설치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에 준하여 사내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사내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④ 교육부장관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 인가 통보 절차에 준하여 사내대학원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내대학원 설치 인가 통보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른 사내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동법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동법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